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41

발의연월일: 2022. 7. 6.

발 의 자:김원이ㆍ기동민ㆍ서영석

양이원영 · 우원식 · 위성곤

이해식 • 임종성 • 최혜영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영리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및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돼 처벌받는 등 심각한사회문제로 대두됨.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가발생함. 해당 병원은 사망 환자에 대한 대리수술 등 불법수술 의혹을받아 경찰 수사중임.

특히 이 병원은 지난 2017~2018년에도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혐

의로 적발된 바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1심에서 담당 의료진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음.

지난해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의 대리수술을 적 극적으로 감시,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큰 공감을 얻은 바 있음. 그러나 반복적인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요구됨.

이에 영리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한편,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3조의2 삭제,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년"을 "3년"으로 하여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제3조 또는 제5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 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	<u><삭 제></u>
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	
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	
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u> 처한다.</u>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	
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u>2년</u> 이상	<u>3년</u>
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	
만원 이상 <u>1천만원</u> 이하의 벌	<u>3천만원</u>
금을 병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
	조, 제3조 또는 제5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
	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
	1호 또는 제5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